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11.28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동 정원보강, 민방위재난관리과 "재난관리계장" 요원 및 청소행정과 "재활용품 수거차량"운전원 보강에 따라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에 의거 "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"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구의 본청, 의회사무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음.

. 구 본 청 : 435명 <증 1명> ※ 감소2명(동 정원보강)

※ 증3명(청소기사2, 재난관리계장 요원1)

. 의회사무국 : 16명 <변동사항 없음>

. 보 건 소 : 46명 <변동사항 없음>

. 동 : 264명 <증 2명>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본청 : 435 명

4. 동 : 264 명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 (안)
제2조 (정원의 총수) 구의 본청 (이하 "구본청"이라 한다), 의회사무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본청 : <u>434</u>명 4. 등 : <u>262</u>명	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 1. 구본청 : <u>435</u>명 4. 등 : <u>264</u>명